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추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추가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가.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시험구분	모집 단위		직급	선발예정인원(명)	학력 및 응시자격
공개경쟁	합 계			167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	사회복지	9급	129	
		사회복지(장애인)	9급	16	
		사회복지(저소득층)	9급	16	
		사회복지(시간선택제)	9급	6	

나. 공통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18세 이상(199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원서접수시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2018.2.13.)까지 자격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2018.2.13.))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응시대상자의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라.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봄(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 체류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 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 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

마.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행정안전부 지침 적용)

-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시간 별도 지정)할 것을 예정하는 자
-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은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우선 적용
- 승진가능 계급은 제한이 없으나, 관리직위에 보직 불가
- 영리업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 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

바.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 동일 직류 일반모집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음
 - ※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선발예정인원 증가시, 다음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시 초과합격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사.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대 상: 공개경쟁 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
 -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대상
- 임용목표: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변경 가능
- 실시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함
 -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2

시험 실시방법 및 과목

가. 시험실시 방법

-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 당 1분 기준
- 제3차 시험: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나. 시험과목

직렬·직류	직급	시험과목
사회복지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포함)	9급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 9급 선택과목 중 고교이수과목 출제범위
 - 사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 수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 점수를 적용(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3

시험 일정

응시원서접수	필기시험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인성검사	면접시험	
2017.10.20.(금) ~ 10.24.(화) (취소마감일: 10.27.(금) 18:00)	12.6.(수)	12.16.(토)	2018.1.24. (수)	2018.2.3. (토)	2018.2.12.(월) ~ 2.13.(화)	2018.2.28. (수)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일정과 합격자 명단 공고: 홈페이지 게시
 -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hrd.seoul.go.kr>)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인성검사에 불참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 필기시험 성적은 서울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전화로 확인 불가)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 간

4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 접속하여 접수
- **접수시간**: 접수기간 내 24시간(단, 시작일(10.20.)은 09:00부터, 마감일(10.24.)은 18:00까지)
 - ※ 문의사항은 **평일 근무시간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단,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응시수수료**: 9급 5,000원
 -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소요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 (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사회복지직에 응시하는 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자격증 취득 예정자의 경우는 취득예정일자를 입력하고 취득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회복지학과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점이수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스캔하여 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 ※ 자격 여부 등을 조회한 결과 허위로 등록한 경우로 확인될 경우에는 접수된 원서를 무효로 함
 - ※ 2018년 2월 사회복지학 관련 졸업예정자(학점이수제 포함)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면접시험 최종일(2018.2.13.)까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 **자격증 취득예정자 증빙서류 제출 시 성명, 생년월일을 제외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는 삭제**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시험응시에 필요한 응시자격 관련 서류 제출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은 자가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된 원서가 무효 처리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저소득층 해당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선택과목, 사진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다만, 접수기간 내에 모집단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함)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철회시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장애인편지의지원 안내 첨부물(붙임 1) 참고

가. 취업지원 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에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
 -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은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

나. 의사상 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한 의사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 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 ※ 1.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따라 의사상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2.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
 - ※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 등에 확인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자격증은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 1개만 각각 가산 인정됨(최대 2개)**
단, 1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자격증과 직렬별 자격증에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본인이 신청한 자격증으로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

직 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2) 직렬별 가산 자격증

직 렬	직 류	직 급	대 상 자 격 증	가산비율
사회복지	사회복지	9급	변호사	5%

라. ‘가’항과 ‘나’항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마. 위의 <‘가’항과 ‘나’항 중 하나>는 ‘다’항 가산점과 각각 합산 적용함

바.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4일 이내 [2017.12.16.(토)~12.19.(화)(단, 마감일(12.19.)은 18:00까지)]**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서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증서번호)를 입력하여야 함(OMR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6 기타 사항

- 근무지역은 중구 등 16개 자치구임(중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공개경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년간 타 사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인한 임용유예는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필기시험일 시험종료 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go.kr>)에 문제 및 정답가안을 공개하고 정답이의제기에 대하여 안내함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 [☎(02)3488-2321~2328]으로 문의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추가시험 장애유형별(임신부 포함)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

1 적용대상

- 2017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접수대상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인 등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 일시적인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등

2 신청절차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계획 확인

-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계획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이 신청 가능한 편의지원 내용과 제출서류 확인



원서접수 시
편의지원 신청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화면에서 본인의 장애 유형 및 등급 선택
-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및 의사진단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기간: 2017. 10. 20.(금) ~ 10. 24.(화) ❖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 (서초동 391)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공개채용팀 <우편번호 06756>



편의지원 신청
검토결과 확인

- 제출서류가 편의제공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2017. 11. 24.(금)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검토결과 게시
- 신청자는 자신의 편의지원 신청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3

편의지원 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 12페이지 내용(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제출서류)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
 -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하여 편의지원을 신청
- 원서접수시 장애편의지원 유형 체크 후 하단의 입력란에 본인의 장애등급,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 별도의 장애인 증명서 제출은 하지 않으며,
 - 원서접수 시 편의지원 신청자로부터 장애 등급 및 유형 등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조회 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음.
 - 단, 증빙서류(의사진단서 및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편의지원 항목을 신청할 경우 해당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2015년도 이후 서울시 시험에 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았던 수험생이 동일한 내용의 편의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면제함.
(※국가직 시험에서 편의지원을 받은 자의 경우 증빙서류 사본 제출 가능)
 - 면제 세부조건
 - 당시 제출한 서류의 전문의가 인정한 편의지원 내용과 이번에 신청하는 내용이 동일할 것
 - **진단서 발급일자: 2015.10.24.이후**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4

장애 유형별(임신부 포함) 편의지원 내용 및 제출서류

장애유형		편의지원내용 (복수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시각장애	1급, 2급, 시야 10도 이내의 3급 · 4급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점자문제지, 음성지원컴퓨터 제공	· 제출서류 없음 · 시야 10도 이내의 3급 · 4급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제출서류 없음	
	3급, 4급 5급, 6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 ✓ 5~6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미만인 경우만 시간 연장 신청 가능	· 제출서류 없음 · 5~6급(좋은 눈의 교정시력 0.3 미만)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제출서류 없음	
기타 시각장애	·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제출서류 없음		
뇌병변	1~3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대필 ·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 · 휠체어 전용 책상	· 제출서류 없음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대필	· 의사진단서 원본 1부	
	4~6급	·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 · 휠체어 전용 책상	· 제출서류 없음	
지체장애	상지	1~3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대필 ·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 · 휠체어 전용 책상	· 제출서류 없음
		4~6급	·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 · 휠체어 전용 책상	· 제출서류 없음
	하지	1~6급	· 별도 시험실 배정 · 휠체어 전용 책상	· 제출서류 없음
청각장애	청각장애	· 수화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인쇄물 제공 · 보청기 등 지참 허용	· 제출서류 없음	
기타장애	임신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 별도 시험실 배정 · 낮낮이 조절 책상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인 신체장애	· 장애정도 등 검증 후 결정	· 의사진단서 원본 2부 (상이한 종합병원에서 각 1부씩 발급)	

※ 시간연장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종합병원 의사진단서로 제출(소견서 불인정)

※ 확대문제지: 118%, 150%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A3규격)

※ 축소문제지: 82%로 축소 (A4규격) / · 확대답안지: 표기형 (A4규격)

※ 수학, 과학, 경제학원론 등 일부 과목의 경우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컴퓨터가 지원되지 않음

5

의사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 발급기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 ※ 단, 임신부의 경우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것도 허용
 - ※ 종합병원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병원·약국 찾기〕서비스에서 조회
-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는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
- 발급일자: **2015.10.24.이후 발급**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한 구체적 진술(예시 중의 녹색 표시 내용)

장애유형	장애정도(등급)
시각장애	좌/우 각각의 교정시력 및 시야
뇌병변장애	장애 등급 및 장애정도에 대한 구체적 내용
임신부	임신주수, 필기시험일 현재 출산예정 여부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예시 중의 적색 표시 내용)

▷ 응시동작 관련 불편사항

③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예시 중의 청색 표시 내용)

▷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 모두 기재

○ 의사진단서/소견서 예시

장애유형	의사소견서 예시
시각장애 3급~4급	상기인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 0.06, 우 0.05이고, 양안의 시야는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자로서 각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응시가 불가하오니, 음성 지원 컴퓨터 및 점자 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장애유형		의사소견서 예시
시각장애	5급~6급	상기인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 0.2, 우 0.2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A4크기)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연장의 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장애	경증	상기인은 뇌병변 장애 4급에 해당되는 자로서 손, 목,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으며,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연장의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임신부		상기인은 임신 ()주, 필기시험 예정일(2017.12.16)을 전후하여 출산이 예상되는 산모로서, 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장애 등급이 없는 일시적 신체장애의 경우 해당 수험생의 객관적 상황과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 **다음의 경우 편의지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음**
 -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소견서 내용이 다를 경우
 - ✓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및 진단서)의 형식이 올바르지 못할 경우
 -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의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불명확한 경우
- 시험진행 일정상 별도의 보완기관이 없으므로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02-3488-2321~8)으로 문의